


의정활동보고서



제245회 임시회(2011. 2. 9 ~ 2.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3백만 도민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비회기 중임에도 의장단 연석회의와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활동, 또 설날을 전후한 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민생 점검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지방의회 신뢰도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전국 16개 시·도 중 최상위로 평가받았던 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부단한 의정활동을 통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신년도에도 전 의원님들이 합심단결된 모습으로 최우수 모범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 폭설도 많았고 수십 년만의 혹한, 또 국가의 큰 재난인 구제역으로 도민과 도의원, 공직자들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올 한해도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투자유치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낙동강 살리기 등 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도정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9
III. 의안처리		16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29
□ 김수용 의원(1차 본회의)		29
□ 김말분 의원(1차 본회의)		33
□ 김세호 의원(2차 본회의)		36
□ 전찬걸 의원(2차 본회의)		39

부 록

☐ 조례안		45
☐ 결의안		6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5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5회의 상임위원회(폐회중 비포함)와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9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수용, 김말분 의원)을 청취한 후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휴회기간인 2월 10일(수)부터 2월 17(목)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안건 처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세호, 전찬걸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의장실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4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건의문과 합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제245회 임시회 폐회 중인 2월 28일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폭설 피해 지역을 현지 확인하였고, 3월 2일에는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구제역 대책보고 및 가축매몰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1-3호(2011. 1. 28)

라. 집회일시 : 2011년 2월 9일(수)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1년 2월 9일 ~ 2월 18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7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9	1	3	2	2	3 (폐회중 포함)	5 (폐회중 포함)	1	0	2
누 계	117	9	16	15	12	11	15	10	15	14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9(수) 14:00 (제1차)	☐ 개회식 ☐ 일반 사항 보고 ☐ 5분 자유발언 ○ 건설소방위원회 김수용 의원(영천시) ○ 문화환경위원회 김말분 의원(비례대표) ☐ 안건처리 1.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2. 18(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의원(비례대표) ○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의원(울진군) ☐ 안건처리 1.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8(금) 11:00 (제2차)	7.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세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목) 15:41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 안전심사 ○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수) 13:25 (제1차)	☐ 안전심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10(목) 11:05 (제2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 안전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11(금) 11:07 (제3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목) 11:04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금) 11:15 (제2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보건복지여성국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목) 11:05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2. 11(금) 11:08 (제2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수) 15:40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2. 10(목) 11:01 (제2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농수산국	
2. 21(월) 13:00	☐ 현지확인 ○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 농가 방문 ○ 울진민물고기연구센터	
3. 2(수) 11:00 (폐회중 3차)	☐ 업무보고 ○ 구제역 관련대책 보고의 건	
" 15:00	☐ 현지확인 ○ 안동(구제역 관련 매몰지 등)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수) 15:48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2. 10(목) 11:15 (제2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2. 11(금) 11:04 (제3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단	
2. 15(화) 11:00	☐ 현지확인 ○ 김천·구미소방서	
2. 16(수) 11:03 (제4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8(월) 11:05 (폐회중 제5차)	☐ 업무보고 ○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	※도청이전 특위와 연석회의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목) 11:01 (제1차)	☐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경상북도교육청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수) 11:05 (제3차)	☐ 업무보고 ☐ 2011년도 독도수호 업무보고의 건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 12(화) 14:00 (제2차)	☐ 업무보고 ☐ 주요 업무보고의 건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4 (102)	13 (99)	13 (87)	(11)	(1)		(1)	1 (2)	
조 례 안	소 계	11 (52)	10 (49)	10 (41)	(7)	(1)		(1)	1 (2)	
	의 회 제 안	4 (12)	3 (11)	3 (10)	(1)				1 (1)	
	도지사 제 출	6 (30)	6 (29)	6 (24)	(5)			(1)		
	교육감 제 출	1 (10)	1 (9)	1 (7)	(1)	(1)			(1)	
규 칙 안		(1)	(1)	(1)						
예산 · 결산		(5)	(5)	(2)	(3)					
동의 · 승인		(10)	(10)	(9)	(1)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1 (13)	1 (13)	1 (13)						
기 타 안		2 (20)	2 (20)	2 (20)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2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5 교육감, ‘10. 10. 15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1. 24 채옥주 의원 외 25명, ‘11. 2. 10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5 (21)	1 (3)	(3)	2 (2)	1 (9)	()	(1)	()	(1)	1 (2)
의 회 운 영										
기 경 회 계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1									1
농 수 산										
건 설 소 방	4	1		2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21)	5 (21)	()	()	()	()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건설소방	4	4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1건(조례안 10, 결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1. 1. 31)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1. 1. 31)
한창화 의원 외 18명 (2011. 1. 28)	경상북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1. 1. 31)
장경식 의원 외 18명 (2011. 1. 28)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기획경제 (2011. 1. 31)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1. 31)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1. 31)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1. 31)
경상북도지사 (2011. 1. 2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1. 31)
채옥주 의원 외 25명 (2011. 1. 24)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문화환경 (2011. 1. 31)
윤성규 의원 외 14명 (2011. 2. 1)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1. 2. 7)
경상북도교육감 (2011. 1. 2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2011. 1. 31)

2. 조례공포 사항(2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 12. 2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2010. 12. 30 (제3223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0. 12. 30 (제3224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2010. 12. 30 (제3225호)
2010. 12. 21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 12. 30 (제3226호)
2010. 12. 21	"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0. 12. 30 (제3227호)
2010. 12. 21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3 (제3228호)
2010. 12. 21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	2011. 1. 3 (제3229호)
2010. 12. 21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3 (제3230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1. 6 (제3231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2011. 1. 6 (제3232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1. 1. 6 (제3233호)
2010. 12. 21	"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1. 6 (제3234호)
2010. 12. 21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35호)
2010. 12. 21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36호)
2010. 12. 21	"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	2011. 1. 6 (제3240호)
2010. 12. 21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2011. 1. 6 (제3241호)
2010. 12. 21	"	경상북도 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11. 1. 6 (제3242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 12.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37호)
2010. 12. 24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38호)
2010. 12. 24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39호)
2010. 12. 2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 6 (제3243호)

3. 상임위 부결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안 건 명	의결사항 (의결일)
경상북도 교 육 감	2010. 1. 22 (회부: 2010. 9. 1 승계)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부 결 (2010. 12. 21)

4.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2010. 12. 28 ~ 12. 31 (4일간)	일 본 (시마네현 외 1)	○ 독도지킴이 안용복 도일 행적지 탐방 • 시마네현 독도관련 도발 현장확인 • 독도관련 자료 수집 ※ 전찬걸 특위위원장 및 이용진 부위원장
농수산물 위 원 회	2011. 1. 14 (금)	농 수 산 위 원 실	○ 구제역 방역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접종 이행촉구 • 살처분 후 농가생계 대책마련 및 2차감염 방지대책 마련 촉구 ※ 이상용 위원장 및 농수산 위원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동 남 권 신 국 제 공 항 유 치 특별위원회	2011. 1. 25 (화)	울산시의회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4개(경북, 대구, 경남, 울산)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 4개 시·도의회(특위)공동 건의문 및 합의문 채택, 공동대응 결의 ※ 박기진 위원장 및 김희원 부위원장
	2011. 2. 7 (월)	국 회 기자회견장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4개(경북, 대구, 경남, 울산) 시·도의회 공동기자회견 •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입지 우수성 및 당위성 설명 • 3월 입지 선정완료 촉구 ※ 박기진 위원장 등 7명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제36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0. 12. 27(월), 10:30
- 장 소 : 도 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및 서정숙 부위원장

○ 경북대 후원의밤 행사 참석

- 일 시 : 2010. 12. 27(월), 18:00
- 장 소 : 칠곡경북대병원 대강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0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포상 전수식 참석
 - 일 시 : 2010. 12. 29(수), 10:00
 - 장 소 : 도 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0. 12. 29(수), 18:3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현충탑 참배
 - 일 시 : 2011. 1. 3(월), 07:30
 - 장 소 : 영천호국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년 대구·경북 매일신문사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1. 1. 3(월),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외 쏠 도의원
- 폭설 피해농가 방문
 - 일 시 : 2011. 1. 6(목)
 - 장 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외 농수산위원 전원

- **경북교육공동체 시민연합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1. 1. 6(목), 11:00
 - 장 소 : 문화웨딩
 - 참 석 : 서정숙 교육 부위원장 및 김원석 의원
-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1. 1. 6(목), 18:3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년도 교육삼락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1. 1. 7(금), 11:0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외 교육위원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1. 7(금), 11:00
 - 장 소 : 경운대학교 국제회의실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사단법인 담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1. 1. 12(수), 11:00
 - 장 소 : 담수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경북행복재단 이사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1. 13(목),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D-100 기념홍보 현판 점등식 참석**
 - 일 시 : 2011. 1. 18(화), 14:00
 - 장 소 : 경주역 광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북도립대학 발전기금 이사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1. 19(수), 11: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 회의실
 - 참 석 :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1. 19(수),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하수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 및 김종천 ·
배수향 의원
- **원자력클러스터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 20(목), 15: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및 기획위원
김기홍 · 박병훈 · 전찬걸 의원

-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1. 20(목), 14:00
 - 장 소 : 도청 제3회의실
 - 참 석 : 김하수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
- SK케미칼(주) 안동백신공장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1. 1. 24(월), 15: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 참 석 : 이영식 문화환경 부위원장
- 20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1. 25(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박진현 의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3개 시도공동유치위원회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1. 1. 25(화), 15: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 경상북도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대의원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1. 1. 25(화), 11:00
 - 장 소 : GM컨벤션웨딩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경상북도 투자유치 서울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1. 1. 26(수), 11:30
- 장 소 : KOTRA IKP(서울)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6. 인사 발령사항

직 위	성 명	일 자	비 고
의회사무처장	최 영 조	2011. 1. 18자	
문화환경전문위원	강 철 구	2011. 1. 24자	

VI. 5분 자유발언

□ 2011년 2월 9일(수)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용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비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인륜지대사'라 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4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례가 으뜸으로 그와 관련한 장례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은 다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6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인 1999년 화장률 30.3%에 비하면 약 2배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화장률이 2007년의 경우 44%였다가 2008년 48.3%, 2009년 50%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른 화장 인식 개선과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화장시설은 2009년 현재 열 곳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 태반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로 수도 모두 스무 개에 지나지 않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민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장장이 없는 경북의 시·군 주민들은 화장장이 있는 현지주민들에 비해 훨씬 고가의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화장장의 경우 지역 이외의 거주자가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지역주민보다 최저 두 배에서 최고 열네 배의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하고자 하면서도 경북도민이 대구화장장을 이용할 경우는 대구시민이 지불하는 9만 원보다 다섯 배 많은 45만 원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하여 경북도민은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칠곡군의 경우는 지역은 경북이지만 시설업체는 법인화하여 대구시민을 위한 화장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북도민의 경우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매장 위주였던 장례문화가 화장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화장장이 타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장장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훨씬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각 시·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은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 하여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화장장의 추가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호 연결한 몇 개의 시·군이 함께 광역화 화장장 건립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주시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합의로 경주시 서면 도리 산 78번지에 화장로 7기 정도의 현대식 화장장과 장사공원을 건립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천시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역화 화장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천시와 경주시가 화장장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사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여 중앙과 도로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영천시 또한 건립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경주와 영천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경주시로서도 예산 절감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젠가는 각 시·군마다 최소한 개씩의 화장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으나, 그 전단계로 우선 광역 화장사업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도내 23개 시·군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화 사업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고 인접 지자체들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도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1년 2월 9일(수)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와 함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부르는 등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 1.31명으로 2009년에는 1.27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도 역시 결혼·임신·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미혼

남녀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교육 중심의 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지원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010년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한 3,0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신·출산·보육단계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시다만,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육단계 사업의 경우 실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여성들의 보육환경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을 오히려 외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 및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 차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저비용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국·공립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마련, 전문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복지 경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2월 1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세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일반
회계 총예산 4조 396억 5,000만 원에서 경상경비가 4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에 45.6%, 2010년에 45.2%, 그리고
2011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6,625억 3,000만 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2조 1,016억 400만 원으로 45.1%로 되는
등 총예산에서 경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도 경상경비화
되는 등 도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액 중 전액 국비사업은 감소
하고 매칭을 요하는 국비사업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경상북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경상북도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의 도비부분만을 말씀드리면, 향후 10년 간 2,600억에서 많게는 4,450억 원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 부문 지출에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부 시·군의 경우 3대문화권사업비가 막강히 지출되다 보니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각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운영비 역시 지방비의 몫으로, 이는 다시 경직성경비로 상승되는 재정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도청신도시사업, 동해안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경상북도의 재정은 현재와 같은 세입구조에서 더욱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도비 등 지방비의 고려 없이 출신지역 또는 간부 개인과의 관계로 특정 지역 및 특정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보도자료부터 돌리고 이후 추진하다 자리를 옮기는 등 무책임한 한견주의식 행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상북도 재정문제를 효율화 하고 동시에 경상북도 재정관리시스템 도입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재정관리위원회와 재정관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위원회는 현재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그리고 민간 재정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경상북도의 재정관리와 재정관리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관리센터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기관으로 도청도 의회도 아닌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투자 지원업무와 도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와 관리업무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 재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 경상북도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관리를 공동으로 운영·지원하고 센터의 예산과 관리, 인사는 재정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경상북도 재정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북도의 재정관련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경상북도 재정은 앞으로 언제든지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재정이 튼튼한 경상북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 2월 1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구제역과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 도민께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도지사께서는 폭설피해지역이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며, 독도특위 위원장인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65주년, 6·25 발발 60주년, 한·일 강제병합 101주년이 되는 해로서 과거 치욕의 역사를 되새겨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해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볼 때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느낍니다.

현재 동아시아 영토분쟁 지역으로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열도 4개 섬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가 있으며, 특히

조어도는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분쟁이 첨예화 되는 등 국가 간 영토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을 보면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부과학성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3월말이나 4월초에 독도의 일본영토 표기 관계를 결정할 예정이며, 차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여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저의가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회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정부차원에서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역사교과 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교과내용에서도 정규과목의 수업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간에 연간 10시간 수업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라도 독도에 대한 교과내용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과목 시간에 실시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사료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한데 현재 일어를 전공한 전문계약직 1명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제법과 영어에 능통한 전문직 1명과 울릉도·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과학을 전공한 전문직 1명 정도가 추가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독도를 홍보하는 홍보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독도수호과에 5평 정도의 공간에 독도 모형과 사진 몇 점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학생이 홍보관을 다녀갔는데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도로서 창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도수호과 사무실 전체를 홍보관으로 만들고 차후 도청이전 시 신청사 내에 300여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독도홍보관을 꼭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해 놓고 '안용복 예술제, 독도 영유권 대응 학술 심포지엄' 등 독도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대회와 독도자료 전시 등의 행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1건
- 결의안 : 1건

■ 조 례 안

(원안가결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유보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지원국”을 “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6호 중 “민방위·비상대책·방재”를 “방재(자연재난)”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청이전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재원확보 및 보상 종합계획 수립
3. 도청이전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6.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 설치 종합계획 수립
7. 도청이전신도시 조성토지 분양 및 주택공급계획 수립
8. 도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9. 기타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 제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30호
까지로 하고,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인적재난 및 국가기반재난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실 운영
8.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도선 관리
9. 민방위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시설 및 경보망 운영
1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청이전추진본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이외의 부분 중 “4,604명”을 “4,7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96명”을 “1,906명”으로 하며, 제2호
중 “2,570명”을 “2,747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u>4,791</u>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u>1,392</u>	-			
	2~3급		1		1		
	3 급		<u>10</u>	<u>9</u>		1	
	3~4급		1	1			
	4 급		<u>75</u>	<u>55</u>	7	<u>4</u>	9
	5급 이하		<u>1,305</u>	-			
별 정 직	소 계		<u>42</u>	-			
	1급 상당		1	1			
	3급 상당		1	1			
	4급 상당		3	1	2		
	5급 상당 이하		<u>37</u>	-			
연 구 직	소 계		<u>190</u>	-			
	연구관		34			32	2
	연구사		<u>156</u>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9			9	
	지도사		18	-			
소 방 직	소 계		<u>2,747</u>	-			
	소방정		18	2		16	
	소방령 이하		<u>2,729</u>	-			
기능직 계			<u>351</u>	-			
교 원	소 계		41	-			
	학 장		1			1	
	교 수		29			29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20	일반직 : 3급 1, 4급 3, 5급 이하 15 연구직 : 연구사 1		
낙동강살리기 사업단	9	일반직 : 3급 1, 4급 1, 5급 이하 7	2011. 12. 31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장, 낙동강사업 지원팀장
쌀산업 FTA 대책과	1	일반직 : 4급 1	2011. 12. 31	쌀산업FTA 대책과장
환경특별 관리단	10	일반직 : 4급 1, 5급 이하 8 연구직 : 연구사 1	2012. 12. 31	환경특별 관리단장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 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경상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당은 매 시간당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2월 18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징수 구분표(검정고시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법 령 근 거
(1) <u>중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u>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u>과목합격증명서</u>	1통 " "	200원 200원 <u>200원</u>	「 <u>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u> 」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61조
(2) <u>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u>	○ 응시수수료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1인당 1통 " "	10,000원 200원 200원 200원	「 <u>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u> 」 제17조
(3) 고등학교입학시험수수료	○ 응시수수료 (시험전형) ○ 응시수수료 (무시험전형)	<u>1인당</u> " "	5,000원 2,500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
(4)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 <u>응시수수료</u> ○ <u>실기·실현 교과목 응시자 추가 징수</u> ○ 합격증명서	1인당 " 1통	<u>25,000원</u> <u>10,000원</u> 300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 및 제21조
(5) 기타증명수수료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수료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또는수료예정 증명서 ○ 재적증명서 ○ 공사실적증명서 ○ 신원에 관한 증명서 ○ 기타증명서	1통 " " " " " " " " "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61조

(심사유보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의 문화 향수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도지사는 저소득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이용금액은 개인별 연간 5만원 상당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소득계층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 의 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비즈니스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성장의 핵심적 네트워크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따라 금년 상반기 입지선정 예정에 있다.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막스플랑크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기초과학인프라는 물론 산업기반, 접근성, 교육문화 등의 정주여건이 국제적인 수준인 경북을 비롯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기초과학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이 발달된 곳으로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효과 창출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대구 및 울산광역시와 공동연대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입지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입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정되어야 한다.

하나. 입지는 벨트 거점지구 최적지 경북을 비롯 기능지구인 대구와 울산 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3개 시도가 역량을 결집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2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